

# 예 산 총 칙

2022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92,539,338	14,776,180
일반회계	472,071,163	14,162,135
특별회계	20,468,175	614,045
기타특별회계	20,468,175	614,045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1,158,992	34,770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726,100	21,783
수질개선특별회계	14,312,670	429,380
주차장특별회계	4,270,413	128,112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서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 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100,363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0,2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